

2005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물품

우리조합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로부터 관세감면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받아 2005년도 국산대체 불가한 골판지포장설비에 대한 관세감면대상물품을 2004년 5월~6월에 조사한 결과, 골판지 제조기(지폭1,800mm)를 포함한 총 11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

면 대상물품을 신청하여 지정 받았다.

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2005년도에도 기존연장 10개품목, 신규추가 1개품목(다목적스팅머신)은 8%중 50%를 감면받게 되었습니다.

연번	관세율표번호	부호	품명	규격
65	8479	89	결속기 또는 포장기 (결속기·포장기 및 튜빙기를 포함한다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. 2. 기저귀·생리대·화장지·키친타월·미용지·롤(Roll) 또는 시트(Sheet)상태의 종이 제품을 투입·정렬·포장·실링(Sealing) 및 자동취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. 최대포장능력이 분당 50백(bag/min) 이상인 것 나. 종이상자·필름 또는 튜브를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으로서 최대처리능력이 분당 6케이스(case/min) 이상이거나 6번들(bundle/min) 이상인 것 3. 롤(Roll) 또는 시트(Sheet)상태의 완성된 종이제품처리용으로서 투입·정렬·포장·실링 또는 테이핑 공정으로 구성되며, 자동취출 기능이 있고, 최대포장능력이 시간당 20롤(roll/h) 이상인 것, 분당 14림(ream/min) 이상인 것 또는 분당 3팩(pack/min) 이상인 것
57	8428	90	적재기 또는 스테커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 제어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1. 골판지 적재용으로서 기계폭이 1.8미터(m) 이상이고, 분당 최고처리속도가 250미터(m/min) 이상인 것
82	8441	10,80	절단기 [슬리터(Slitter) 또는 파단분할기(Splitting)를 포함한다]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. 2. 알루미늄박·알루미늄판·종이·필름·스테인리스 또는 판자를 절단 후 트리밍(Trimming) 또는 권취할 수 있는 것 41. 골판지를 횡절단 하거나 절단 후 트리밍 할 수 있는것
94	8439	20,30	골판지제조기 (Corrugater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편면골판지제조용 또는 양면골판지제조용으로서 지폭이 1.8미터(m) 이상이고,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(m/min) 이상인 것에 한한다.

연번	관세율표번호	부호	품명	규격
95	8439	30	오토스플라이서 (Auto Splicer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으로서 지폭이 1.8미터(m) 이상이고, 최고처리속도가 분당 250미터(m/min) 이상인 것에 한한다.
100	8441	30 60	플렉소폴더스티처 (Flexo Folder Stitcher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골판지상자 제조시 인쇄공정 및 봉합공정을 동시에 수행하고, 최대처리속도가 분당 700회(rpm) 이상인 것에 한한다.
102	8439 8441	10 80	골판지웹(Web)조절장치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제조설비로서 골판지웹의 장력과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.
104	8441	30	플렉소다이커터 (Flexo Die Cutter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상자제조용으로서 인쇄 및 로터리타입의 금지면적이 2천400밀리미터(mm)×1천600밀리미터(mm) 이상이고, 평판타입의 금지면적이 1천600밀리미터(mm)×1천100밀리미터(mm) 이상인 것으로서 인쇄가능이 있으며, 최고절단속도가 분당 100매 이상인 것에 한한다.
105	8441 8443	30 60	플렉소폴더글루어 및 스티처 (Flexo Folder Gluer and Stitcher)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골판지상자제조시 인쇄공정 및 봉합공정을 동시에 수행하고, 최고처리속도가 풀봉합일 경우에는 분당 150매 이상이며, 철박음의 경우에는 분당 1천회 이상인 것에 한한다.
106	8441	30	전자자동제어장치	수치제어·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골판지전분점착제제조용으로서 시간당 최대처리용량이 2천500리터(ℓ /h) 이상인 것에 한한다.
97	8439	30	다목적스팅머신	수치제어,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기계폭이 2미터(m) 이상이고 골판지상자 제조시 스티칭 최고속도가 분당 750회(pcs/min) 이상이며 자동금지 및 계수배출장치가 장착된 것에 한한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조함 홈페이지(www.kcca.or.kr)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